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사시설의 합리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매장된 무연고 시신·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,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 상한 기준을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27. ~ 2024.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제1항 중 “10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4호마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고,

같은 표 제5호마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다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고,

같은 표 제2호다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며,

같은 표 제3호라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고,

같은 표 제4호라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한다.

별표 5 제1호다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고,

같은 표 제2호다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며,

같은 표 제3호라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고,

같은 표 제4호라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에 매장된 시신·유골의 봉안기간

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고 있는 경우 그 봉안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의2(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 된 분묘의 처리)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 기간은 <u>10년</u> 으로 한다. ② (생 략)	제26조의2(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 된 분묘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<u>5년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73